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82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2026. 3. 12.(목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출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”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○ 제출자 : 구청장

○ 제출일 : 2026. 2. 27.(금)

○ 회부일 : 2026. 3. 5.(목) (의안번호 : 26-25)

2. 제출이유

○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하여 법령 해석상의 중의성을 해소하고, 병역명문가를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국가유공 및 병역 이행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○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원칙 추가[안 제3조(원칙)]

○ 주민자치위원과 고문 임기 규정 명확화[안 제17조(구성 등)]

○ 주민자치위원 해촉 사유 추가[안 제20조(해촉)]

○ 병역명문가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에 추가

[(안 별표2)]

4. 참고사항

○ 관계 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정의)

○ 입법예고: 2026. 1. 29. ~ 2026. 2. 19. (제출된 의견 없음)

5. 검토보고

1 조례의 개정 취지

○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하여 법령 해석상의 중의성을 해소하고, 병역명문가를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국가유공 및 병역 이행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.

2 주요 개정내용

○ 주요 내용

제2조

- 자치회관 설치 목적 규정 중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하여 문장을 간결하게 수정함.

제3조

- 자치회관 기능 관련 용어를 “조장”에서 “진흥”으로 변경하여 보다 적절한 표현으로 정비함.
- 정치적 이용 제한 규정을 정비하면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는 예외로 명시함.
- 자치회관을 종교적 이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함.

제6조

- 조문에 사용된 “시설등” 표현을 “시설 등”으로 정비하여 법령 표기 기준에 맞게 수정함.

제10조

- “시설등” 및 “사용료등” 용어를 각각 “시설 등”, “사용료 등”으로 정비하고, 제6항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함.

제11조

- 자치회관 이용자의 의무 규정 중 용어를 정비하고, 사용료 징수 규정의 문장을 명확히 정리함.

제14조

- 사용료 관련 용어를 “사용료 등”으로 정비하여 조문 표기 통일성을 확보함.

제16조

- 자치회관 시설 관련 용어를 “시설 등”으로 정비함.

제17조

-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, 당연직 고문과 별도의 고문 구분을 명확히 하고, 고문의 수와 구성 방식을 정리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고 시 임기 규정을 명확히 규정함.

제20조

- 주민자치위원 해촉 사유를 정비하고, 두 개 이상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시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를 해촉 사유로 신설함.

제23조

- 위원회 구성 관련 문구를 “고문을 포함한 위원”에서 “위원 및 고문”으로 정비하여 표현을 명확히 함.

별표 2

- 사용료 감면 대상 규정을 정비하고, 관련 법령 표현을 “의한”에서 “따른”으로 수정하며 감면 대상 항목을 추가함.

3 기대효과

- 자치회관 운영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이용 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며,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자치회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자치회관의 정치적·종교적 이용 제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설 이용의 중립성을 확보하고,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서의 본래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및 위원의 임기와 구성 기준을 정비하고, 동일인이 여러 주민자치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안정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4 타 자치구 병역명문가 감면 지원조례 현황

○ 서울특별시 자치구중 25개 중 4개자치구가 시행중이며 (16%)
자치구 병역명문가 면제 또는 50% 감면 시행

6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하고 국가유공 및 병역이행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병역명문가를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자치회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,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기준 및 자치회관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, 특히 정치적 이용 제한 규정의 명확화와 종교적 이용 목적 배제 규정 신설, 주민자치위원회의 중복 위원 활동 제한 등은 자치회관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, 자치회관 이용 제한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운영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자치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와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참고자료 **관련 법령**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10조(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) ① 법 제14조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포 1과 같다. 다만,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[별표 1]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

구 분	시 · 도 사무	시 · 군 · 자치구 사무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	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 · 도와 시 · 군 및 자치구에 각각 공통된다.	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	1)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2) 시 · 군 · 자치구에 공통되는 복지업무의 연계 · 조정 · 지도 및 조언	1) 주민복지 증진사업계획의 수립 · 시행 2) 시 · 군 · 자치구 단위 주민복지시설의 운영 · 지원 3) 주민복지 상담 4) 환경위생 증진 등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 실시

□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“이라 한다)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·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)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·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 · 입장료 · 수강료 · 주차요금 · 진료비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.<개정 2025.3.6.>

[별표 2]

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(제10조제5항 관련)

감 면 대 상	감면비율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	전액면제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	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	
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	50%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	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	20%

※ 수강료의 감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1인당 1개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, 그 밖에 위 감면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